◉ 강원지방우정청 고시 제2026 - 14호

「우편법 시행규칙」 제12조(보편적 우편역무의 제공기준 및 이용조건 등) 제4항에 따라 우체국 이전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6년 10월 1일
강원지방우정청장

우체국 설치장소 이전에 관한 고시

1. 주요 내용

가. 이전내역

※ 원활한 이전을 위하여 이전일 우체국 업무 중지

총괄국명	대상국명 (관서급)	우체국 설치 장소		업무개시일 (이전예정일)
		현행(~에서)	변경(~으로)	
태백	**태백구문소동** (6급)	(도로명) 태백시 장성로 219	(도로명) 태백시 평화길 9 ※ 구문소동주민자치센터	'26. 10. 6.(화) ('26. 10. 2.(금))
		(지번) 태백시 장성동 74-15	(지번) 태백시 장성동 99-42	
삼척	**삼척미로** (6급)	(도로명) 삼척시 미로면 적병길 36	(도로명) 삼척시 미로면 적병길 10 ※ 미로면행정복지센터(별동)	'26. 10. 12.(월) ('26. 10. 8.(목))
		(지번) 삼척시 미로면 하거노리 224-3	(지번) 삼척시 미로면 하거노리 216-3	
정선	**정선나전** (6급)	(도로명) 정선군 북평면 북평7길 18	(도로명) 정선군 북평면 북평6길 36 ※ 북평면행정복지센터	'26. 10. 19.(월) ('26. 10. 16.(금))
		(지번) 정선군 북평면 북평리 195	(지번) 정선군 북평면 북평리 221-3	

나. 이전사유 : 지방정부 공간 공동이용(이음우체국)에 따른 우체국 이전

2. 존속기한 : 이 고시는 각 우체국 이전 및 업무개시일 익일까지 유효